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382
----------	------

2025년 3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최유희 의원(찬성자 23명)
나. 발 의 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 부 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 정 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공유 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상설 위원회의 필요성이 낮아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건 발생 시점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또한, 기본계획을 필요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표현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본계획을 필요 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의2제1항)
- 위원회를 설치·운영에서 필요 시 구성 가능한 비상설 체계로 전환(안 제11조제1항 및 제5항)
- 위원회 소집 근거를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25.2.11. ~ 2.1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필요시 수립하도록 조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며(안 제11조), 그 소집 근거를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안 제13조제2항)하는 한편, 조례의 인용 법령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제8조제1항, 제9조의2제3항)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는 2012년 공유(共有)의 촉진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는 공유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를 통해 경제·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관을 공유촉진 위원회가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있음(’25. 2월 기준, 20개).

〈서울시 지정 20개 공유기업·단체 현황(’25. 2월 기준)〉

연번	기관명	사업내용	지정기간	지정횟수
1	열린옷장	정장을 기부 받아 청년구직자에게 대여	'22.05.17. ~ '25.05.16.	4회
2	히든북	공원, 광장 등 유휴공간 공유	'22.05.17. ~ '25.05.16.	3회
3	주차장만드는사람들	ARS를 이용한 주차장 공유	'22.05.17. ~ '25.05.16.	2회
4	강서양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재사용(활용) 자원을 모아 나눔 코너 운영	'22.05.17. ~ '25.05.16.	1회
5	더치스토어	소상공지역업자 점포 공유 등	'22.05.17. ~ '25.05.16.	1회
6	(주)허밍비	주민 재능을 통한 이야기 발굴, 녹음	'22.12.20. ~ '25.12.19.	3회
7	마을발전소 사회적협동조합	장난감 수리·소독 기술 재능 공유 등	'22.12.20. ~ '25.12.19.	2회
8	(주)엘로우클럽	예술인 창작, 공연을 위한 창작공간 공유	'22.12.20. ~ '25.12.19.	1회
9	(주)위홈	합법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	'23.06.01. ~ '26.05.31.	2회
10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지역공유공간 운영 및 자원 공유	'23.06.01. ~ '26.05.31.	2회
11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	지역기반 자원순환 교육 및 장터 운영	'23.06.01. ~ '26.05.31.	2회
12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공약데이터 발굴 및 활용 프로젝트	'23.06.01. ~ '26.05.31.	2회
13	몽당협동조합	연극 기반 심리 프로그램 운영	'23.06.01. ~ '26.05.31.	1회
14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공유공간을 통한 고립 청년 네트워크 운영	'23.06.01. ~ '26.05.31.	1회
15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중고유아차 방문 수거와 세척	'23.06.01. ~ '26.05.31.	1회
16	주식회사 퍼다	무인 스마트 우산 대여	'23.06.01. ~ '26.05.31.	1회
17	재단법인 임팩트재단	창업가 업무공간 공유, 멘토링 등 재능공유	'24.09.13. ~ '27.09.12.	4회
18	1.5도씨	중고 물품 수거 후 재판매, 취약계층 기부	'24.09.13. ~ '27.09.12.	1회
19	사단법인 온기	고민편지에 손편지 답장으로 재능 기부	'24.09.13. ~ '27.09.12.	1회
20	순환지구	공구대여, 텀블러 세척존 등 운영	'24.09.13. ~ '27.09.12.	1회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나. 세부내용 검토

1)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주기 변경 및 실적평가 규정 삭제

(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

- 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4항은 공유촉진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본계획을 재량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도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u>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시행계획</u> <u>을 수립·시행하여야</u> ----- -----.

- 이는, 시장이 공유 정책을 수립하는데 최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시민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기본계획(5년 단위 계획)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는 것은
 - 정책 방향성의 부재(장기적 비전의 부재), 우선순위 결정기준 모호, 사업의 개선방향 모호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정책의 목적(제1조, 자원 활용의 극대화,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을 달성하는 과정에 로드맵 또는 중장기 계획 없이 단기계획으로만 추진하려는 것으로, 오히려 추진과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시장의 실적평가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기 평가대상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실적평가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 공유 사업 관련 실적평가 폐지 내역 〉

-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 사업 실적평가 : 해당 사업 폐지(2023년)
- 공유기업 지원 사업 실적평가 : 해당 사업 폐지(2024년)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다만, 통상적인 정책추진의 방식은 다양한 요소(‘정책 방향성’과 ‘사업실적’ 및 ‘사회 여건’ 등)에 대한 올바른 평가 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순으로 추진하고 이를 다시 개선하는 것인바,
 - 정책(기본·시행 계획)과 사업(계획 내 세부사업)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계획 내 일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 공유경제 관련 서울시 정책 추진을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본 조례의 제5조(공유 촉진정책)가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¹⁾, 공유 촉진 관련 정책은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바,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1) 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 5의2. 공유 정보의 확산과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플랫폼의 운영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례 인용 법령 명칭 정비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의2제3항)

- 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9조의2제3항은 조례의 인용 법령 명칭을 정확히 (띄어쓰기 반영 등)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p> <p>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p> <p>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 ----- ----- 「협동 조합 기본법」 -----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p>

3)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11조, 안 제13조제2항)

- 안 제11조 및 안 제13조제2항은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화 하기 위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1조제5항), 회의 소집 요건을 일원화(안 제13조제2항)하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지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생략)</p>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⑥ (생략)</p>	<p>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u>시장은 공유 ----- 지정 ----- 의하여 -----</u></p> <p>- <u>구성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호선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3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p> <p>1. <u>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u></p> <p>2. <u>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u></p> <p>3. <u>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③ ~ ⑤ (생략)</p>	<p>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 회의는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 공유촉진위원회는 공유단체·기업을 지정하고, 공유정책을 수립·평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자 2012년 본 조례 제정 당시부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상설위원회로서 기능하고 있음.

〈 공유촉진위원회 운영 개요 〉

□ 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 **구 성** : 총 12명(당연직1, 임명직2, 위촉직9)
- **임 기** : 3년, 1회 연임 가능
- **기 능** :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정책 수립·평가,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 등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전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전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또한, 행정안전부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의 경우 정비 방안으로 비상설화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미개최위원회 ·3년간 미개최 ·1년간 미개최	⇒ 폐지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위원회 ·기능 유사·중복 ·기능 독립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통·폐합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행안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미개최 ·비효율	⇒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사후)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비상설화) 제도적 절차, 주민 안전 등 필수적 사항*을 다루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

* 주민투표청구 심의, 주민 생명·안전·건강 관련 심의, 사고조사 관련 심의 등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022. 7월) 발췌

- 공유촉진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연간 4회 미만('22년 2회, '23년 1회, '24년 1회)으로 저조하며, 2024년부터 공유기업·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폐지*되어 위원회 역할이 축소된 상황속에서,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상설화를 통한 위원회 정비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보조금 지원사업 폐지에 대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23.7) 결과에 따른 예산 전액삭감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유촉진위원회 개최 현황 >

연 도	개최횟수	내 용
2022	2회	- 제4기 위원회 구성 - 공유기업·단체 지정 : 11개 기관(신규 5, 재지정 6) * (접수) 28개 기관 - 공유기업·단체 지원 : 2개 기관 * (접수) 7개 기관 - 자치구 지원 : 10개 자치구, 10개 사업 * (접수) 14개 자치구, 18개사업
2023	1회	- 공유기업·단체 지정 : 8개 기관(신규 4, 재지정 4) * (접수) 18개 기관 - 공유기업·단체 지원 : 4개 기관 * (접수) 17개 기관
2024	1회	- 공유기업·단체 지정 : 4개 기관(신규 3, 재지정 1) * (접수) 6개 기관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공유기업·단체 등 지원실적 〉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지원 실적		비고
			선정 단체 수	지원액	
2015년	240	232(97%)	14	232	
2016년	300	280(93%)	24	280	
2017년	260	260(100%)	21	260	
2018년	260	259(100%)	12	259	
2019년	400	362(91%)	13	362	
2020년	500	500(100%)	15	500	
2021년	400	340(85%)	10	340	
2022년	300	70(23%)	2	70	
2023년	150	105(70%)	4	105	

출처 : 행정국 제출자료

- 다만,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안전 발굴 및 위원회 운영 의지 부족으로 개최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아닌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전문가 인력풀이 제한 적일 경우 심의 안전 발생시마다 위원을 새롭게 위촉하는 반복적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안 제11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 현재 행정국장)이 부위원장을 맡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개정안대로라면 부위원장 선임 방식 규정 자체가 사라지므로, 현행 제11조제2항과의 조문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38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곽향기, 김규남,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박 석, 박영한, 박중화, 신복자, 유만희, 이성배,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채수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공유 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상설 위원회의 필요성이 낮아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안전 발생 시점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또한, 기본계획을 필요 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표현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을 필요 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5조의2제1항)
- 나. 위원회를 설치·운영에서 필요 시 구성 가능한 비상설 체제로 전환(안 제11조제1항 및 제5항)
- 다. 위원회 소집 근거를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안 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서울특별시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유”를 “시장은 공유”로, “지원”을 “지정”으로,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를 “위하여”로, “설치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안전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u>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u></p>	<p>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u>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u> ----- -----.</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u>」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u>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중소기업, 「서</p>	<p>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 「<u>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u>」----- ----- ----- -----</p>

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

----- 「협동조
합 기본법」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제11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유 -----
----- 지정 -----
----- 위하여 -----

속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혁신업무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⑤ (생략)

---- 구성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호선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회의는 안건 발생 시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공정촉진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를 검토¹⁾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는 기본계획을 필요 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서울시 관련부서(행정국 시민협력과) 문의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2회(2022년 2회, 2023년 1회, 2024년 1회) 이상 개최된 바 없어 향후 **안전 발생 빈도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향후 공정촉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안전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 고려대상에서 제외함